

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사관의 자격에 ‘4급·5급 법원공무원 또는 「법원조직법」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’ 외에 ‘임기제공무원’을 추가함 (안 제2조제1항)

4.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‘4급·5급 법원공무원’을 ‘4급·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조사관)</p> <p>① 법원조사관은 <u>4급·5급 법원공무원</u> 또는 「법원조직법」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조사관)</p> <p>① -----<u>4급·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612